

## 다학기제 운영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루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이라 한다.) 다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수강신청)** ①다학기제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이 정하는 소정의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다학기제 운영학과의 한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2학기제는 15학점 이상 21학점(졸필 제외)까지 신청하며, 3,4학기제는 기존학기 수강학점(졸필 제외)을 포함하여 21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**제3조(등록금)** ①다학기제 운영학과의 등록금 납부기간이나 등록금액 산정은 1년 2학기제 학과와 동일하며, 다학기제 운영학과의 여름학기, 겨울학기 등록금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②기타 등록금액의 산정과 고지 및 납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4조(강사료)** 다학기제 운영학과의 강사료는 1년 2학기제 학과와 동일하다.

**제5조(기타)** 다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